

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(안)

제 1장 총 직

제1조(명칭) 본 협의체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“본 협의체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협의체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, 위기가정, 취약계층 등을 상시 발굴하고 지원체계 구축으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장 위 원

제3조(구성) 본 협의체는 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권리와 의무) 위원은 본 세칙을 준수하고 협의체 발전에 적극 기여하여야 하며 회의와 모임에 출석하여 발언과 의결권을 가진다.

제5조(임기)

1.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
2.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3.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다.

제 3장 임 원

제6조(임원) 본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.

1. 위원장 : 2명 (동장, 위촉직 민간위원 각 1명)
2. 부위원장 : 1명
3. 간사 : 1명

제7조(임원의 선출) 임원의 선출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하고 결원이 있을 시 보장한다.

1.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동장과 위촉직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1명으로 한다.
2. 부위원장, 간사는 공동위원장이 추천하거나 위원 중 선출한다.

제8조(임원의 직무)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1.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.
2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4장 회의 및 역할

제9조(회의 등)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1.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2. 정기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역할) 본 협의체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
1. 지역내 사회보장 대상자의 발굴
2.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
3. 지역보호체계 구축·운영
4. 그 밖에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인적·물적 자원 발굴과 육성
5.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·지원으로 예방적 복지 강화
6. 그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

제11조(간사)

1.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안건 및 현황을 보고한다.
2. 간사는 협의체의 회의록을 기록·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.

제 5장 회의록

제12조(회의록 작성) 위원장의 책임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.

1.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명단
3. 회의내용 또는 상정안건
4. 회의결과
5.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 6장 기타

제13조(비밀준수의 의무) 위원은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대상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4조(의견의 청취)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
부칙

1. 본 운영세칙은 정기회의에서 가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2. 협의회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·관리한다.
3. 협의회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.